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74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섭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2019. 1.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 16. 접수 제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7. 29. 전남 고흥군 D, E 임야 합계 57,515㎡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토지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폐석임시적치 및 배수시설설치, 작업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부지가 필요하여 전남 고흥군 F 임야 32,139㎡, G 임야 13,488㎡, H 임야 10,966㎡의 소유자이던 I로부터 2010. 12. ~ 2016. 12. 30.까지 토지사용을 승낙받았다.

나. 위 F 임야 32,139㎡, G 임야 13,488㎡, H 임야 10,966㎡(이하 '원고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I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원고는 2015. 11. 3. I과의 매매를 합의해제하고 I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다. 원고가 C를 상대로 사용승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2018. 7. 11.까지 계속 원고 임야를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 임야에 임의로 쌓아 둔 토사를 제거하지 않고 원고 임야에서 불법 채석도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합12610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C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63,134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66,927,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C는 2019. 1. 1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 16. 접수 제9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는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위 868,890,534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63,134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66,927,4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위가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C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

별지